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51

발의연월일: 2022. 9. 14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오영환 · 김홍걸

장철민 • 이정문 • 김수흥

김정호 · 김철민 · 양정숙

안규백 • 이수진॥ • 고영인

민형배 • 김성환 • 김성주

한병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의무 및 관리주체의 권고조치 등의 규정을 두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음.

이러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 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부재하여 관리규약을 통한 자치적인 해 결이 쉽지 아니하고, 또한 이미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의 저감 및 개선에 효과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쉽 지 아니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. 이에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,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·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85조, 제9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 제목 중 "관리비용의"를 "관리비용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관리에"를 "관리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·진단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개량에"를 "개량, 층간소음 저감에 필요한 바닥·천장 보강공사 등에"로 한다.

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3조의3(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·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·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 지방 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 -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-----관리, 층간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 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· 진단에-----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・ (<u>2</u>) -----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량, 층간소음 저감에 필요한 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닥·천장 보강공사 등에-----있다. 제93조의3(소규모 공동주택의 층 <신 설> 간소음 상담 등)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 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・ 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

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·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